#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20

발의연월일: 2022. 5. 16.

발 의 자: 강대식・金炳旭・김선교

류성걸 • 박대수 • 배준영

백종헌 · 서정숙 · 송언석

신원식 • 유경준 • 주호영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병무청은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병역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소 득자·공직자·연예인·체육선수 등 사회관심계층에 대하여 2017년부 터 병적을 별도로 분류하여 병역면탈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사회관심계층 병적별도관리 제도가 시행된 2 017년 병역면제자 비율이 2.4%였으나, 병역면제자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에는 무려 9.9%를 기록하는 등 고소득자의 병역면제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고소득자에 대한 면밀한 병적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병역법에서는 고소득자의 대상을 소득세법상 최고세율 구간에 속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최고세율 구간이 상향할 때마다(202 0년 5억→10억 상향) 고소득자 관리대상 인원이 오히려 축소되는 문제 가 발생함.

이에 고소득자의 병적별도관리 대상을 현행 소득세법상 최고세율 납세의무자가 아닌 병적별도관리 제도 도입 당시 기준인 5억원 이상 으로 개정하여 사회관심계층의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조성에 기여하고 자 함. 법률 제 호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4제1항제4호 중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제1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      |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 |
| 리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 리 등) ①             |
|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다음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         |                    |
| 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                    |
| 포함한다)이 병역준비역에 편         |                    |
| 입된 때부터 현역·보충역·대         |                    |
| 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        |                    |
| 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        |                    |
| 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        |                    |
| 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영 후      |                    |
| 제65조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        |                    |
| 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        |                    |
| 적 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        |                    |
| 적 및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                    |
| 관리할 수 있다.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 4 <u>제14조에 따른</u>  |
|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          | 종합소득과세표준이 5억원을     |
| 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        | <u>초과하는 납세의무자</u>  |
| 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          |                    |
| <u>령으로 정하는 사람</u> 및 그 자 |                    |

년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